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Department of Autonomous Systems Engineering)(이하 “본 학과”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과교수회의

제2조 (구성과 소집) ① 본 학과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학과교수회의를 구성하며, 전임교원은 연구년 및 사전 출장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교수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장 또는 전임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과장이 소집하며, 학과장이 의장이 된다.

제3조 (심의사항) 학과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학에 관한 중요 사항
2. 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신입교원 초빙분야 결정 및 학과 추천에 대한 인준
4. 학과 공간 활용 결정 및 변경
5. 교과과정 수립 및 개편
6. 특별 목적의 학과위원회 설치 운영 및 폐지
7. 기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의결 정족수) ① 학과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한다. <삭제 2026.6.11.>

제3장 (삭제)

제3장 및 제5조는 삭제한다. <삭제 2026.6.11.>

제4장 교과과정

제6조 (교과과정 편성 및 심의) ① 교과과정 편성은 학칙 제18조(교과편성)에 따른다.

②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한 경우 학과장은 개편안을 학과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제5장 졸업

제7조 (졸업학점) 졸업학점은 학칙 제26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11장(졸업)에 따르며, 본 내규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

① 전공과목 최소 이수요건 <개정 2026.6.11.>

적용학번	이수구분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	비고
2024학번 까지	기본전공 + 다전공	주전공 45학점 + 다전공 (복수전공(42학점), 부전공(24학점), 1)연계·융합전공(36학점)) 이수	전공필수 + 전공선택 + 학과 교양필수 이수 1)연계·융합전공은 주전공 이수 교과목과 12학점 이내 중복 인정.
	심화전공	69학점(기본전공45+심화전공24)	
2025학번 이후	제1전공(AI자 율주행시스템 공학과) + 제2전공	제1전공(36학점), 제2전공(36학점) 각 전공별 필수과목 포함	제1전공과 제2전공의 동일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취득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심화전공	48학점 (제1전공과 제2전공 중 선택한 심화전공에서 추가 12학점 이수)	제1전공과 제2전공 중 3, 4학년 과목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 36학점이상 2)부전공 24학점이상 연계·융합전공 24학점 이상	2)부전공(제1전공, 제2전공과 12학점 중복 인정 가능)

① ~ ③ <삭제 2026.6.11.>

④ **2025학번부터 세부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및 신설 2026.6.11.>

심화전공 이수는 학칙시행세칙 제23조(심화전공)에 따른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다전공)에 따른다. 타 전공 학생의 본 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심화전공) 본 학과의 심화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필수학점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 외에 추가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3·4학년 전공과목이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의 전공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전공 졸업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2. (복수전공)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본 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부전공) 본 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에는 본 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이수과목 중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⑤ (타 전공교과 공유 및 학점인정(Codeshare)) 타 전공교과 공유 및 학점인정(Codeshare) (이하 "Codeshare"라 한다)은 학칙시행세칙 제8조(수강신청)에 따른다.

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Codeshare 과목을 본 학과 학생이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과목은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Codeshare 과목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등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수학점과 본 학과 전공이수학점으로서의 중복 인정은 할 수 없다.

⑥ (캡스톤디자인) <개정 2026.01.19.>

1. 모든 학생은 캡스톤디자인Ⅱ를 이수하는 학기에 발표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심사에 통과해야 하며, 해당 과목의 결과물을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1.19.>

2.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표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기에는 보고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6.01.19.>

3.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칙의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한 후 KCI급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다.<신설 2026.01.19.>

4. 장기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은 인턴십에 참여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캡스톤디자인」 수강을 대체인정한다.<신설 2026.01.19.>

제8조 (졸업 및 학위) 졸업 및 학위 수여는 학칙 제28조(졸업 및 학위)에 따르며, 전공별 이수 요건을 만족한 학생에 대하여 학위증에 학위와 이수한 전공을 표기한다.

제9조 (졸업인증) 졸업인증제는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3(졸업인증제)에 따른다.

제6장 재입학

제10조 (재입학 심사) 재입학은 학칙 제11조(재입학)에 근거하여 다음 방식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① 본 학과에서는 재입학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1. 심층면접은 전공기초 분야에 대한 수학능력 및 졸업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두평가로 실시한다.

2. 심층면접위원은 학과장을 포함하여 전임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재입학 허가 여부는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장 전과

제11조(전과) 전과는 학칙 제37조(전과) 및 학칙 시행세칙 제8장(전과)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① 전과 신청자는 전과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과 심사는 학과장이 총괄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8장 장학금

제12조 (장학금의 지급)

- ① 장학금의 지급은 학칙 제61조에 따르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직전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
 2. 전공과목(재수강 포함) 이수학점 기준은 2학년, 3학년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단, 1학년은 교양필수 이수 학점이 높은자, 전공현장실습 제외)
(2026년 2학기 장학금지급부터 적용) <개정 2026.01.19.>
- ② ①항 이외의 장학 관계 사항은 학과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동점자 처리규정) 제12조 ①항을 만족하는 자로서 두 명 이상의 성적이 동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 ① 직전학기 전공 이수학점이 많은 자
- ② 직전학기 전공과목 평점이 높은 자(단, 전공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순의 평점이 높은 자) (2026년 2학기 장학지급부터 적용) <개정 2026.01.19.>
- ③ 직전학기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
- ④ 누적 평점이 높은 자

제9장 현장실습

제14조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0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26.1.19.>
3. (시행일) 이 개정 운영내규는 2025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학생에게만 적용된다.<개정 2026.6.11.>